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0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 우재준 · 김위상 · 이성권

임종득 · 김선교 · 조지연

이종배 · 엄태영 · 김형동

이상휘 • 구자근 • 정동만

주호영 · 김장겸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(Global Water Intelligence)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,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,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,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·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. 한편,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·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.

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

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,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·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"를 "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사업
- 2.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 ·관리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	제9조(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호의 사업을 한다.	
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	②
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.	
이 경우 <u>제1항제5호의2에 따라</u>	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</u>
<u>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</u>	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
운영·관리할 때에는 공사가	<u>할 수 있다.</u>
개발·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	
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	
등을 활용할 수 있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댐 상류 및 그 이외의 지역</u>
	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시설의
	설치 및 운영・관리사업
<u>&lt;신 설&gt;</u>	2. 공사가 개발·관리하지 아니
	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
	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
	<u>시행하는 신·재생에너지설비의</u>
	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